

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미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30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7.

발 의 자 : 김미애 · 서지영 · 김위상
박준태 · 성일종 · 강승규
최수진 · 김기현 · 최보운
유용원 · 김민전 · 김종양
김 건 · 김승주 의원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K-콘텐츠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국가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부상함에 따라, K-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.

현재 문화 관련 법률에는 문화산업 및 콘텐츠산업의 진흥의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나, K-콘텐츠의 활성화에 대한 지원은 개별 시설이나 사업 단위로 분산되어 있어 시너지 창출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. K-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창작, 기술, 인력, 금융, 해외 진출 지원 기능이 유기적으로 집적된 대규모 복합거점을 조성하여 공연·관광 등 연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K-컬처 복합거점지구 및 K-콘텐츠 공연복합구역을 지정하고 통합기반시설 구축과 연계하여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창작·유통·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-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31조의2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11303호), 「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11304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장에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1조의2(K-컬처 복합거점지구의 지정 및 지원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 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역 거점을 조성하기 위하여 「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심융합특구,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콘텐츠 기업 집중 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K-컬처 복합거점지구(이하 “K-컬처거점지구”라 한다)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콘텐츠 창작 및 제작 활동이 활발하고 관련 인프라 조성이 용이할 것
 2. 지역 대학, 기업 등과의 연계 협력이 가능할 것
 3. 해외 진출을 위한 거점화 가능성이 높을 것
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
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K-컬처거점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.

1. 콘텐츠 창작자 및 플랫폼 스타트업에 대한 맞춤형 창업지원 및 디지털 장비·인력 활용 지원
 2. 「콘텐츠산업 진흥법」 제17조의2에 따른 통합기반시설 구축 지원
 3. 지역 대학·기업 연계를 통한 창작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지원
 4. 해외 진출 연계 글로벌 로컬 K-컬처 클러스터 조성 지원
- ③ 그 밖에 K-컬처거점지구의 지정 절차 및 방법,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31조의2(K-컬처 복합거점지구</u> <u>의 지정 및 지원) ① 문화체육</u> <u>관광부장관은 한류 산업의 발</u> <u>전을 위한 지역 거점을 조성하</u> <u>기 위하여 「도심융합특구 조</u> <u>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</u> <u>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심융합특</u> <u>구,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</u> <u>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</u> <u>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, 그</u> <u>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콘</u> <u>텐츠기업 집중 지역 중 다음</u> <u>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</u> <u>지역을 K-컬처 복합거점지구</u> <u>(이하 “K-컬처거점지구”라 한</u> <u>다)로 지정할 수 있다.</u> <u>1. 콘텐츠 창작 및 제작 활동이</u> <u>활발하고 관련 인프라 조성이</u> <u>용이할 것</u> <u>2. 지역 대학, 기업 등과의 연</u> <u>계 협력이 가능할 것</u> <u>3. 해외 진출을 위한 거점화 가</u> <u>능성이 높을 것</u>

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K-컬처거점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.

1. 콘텐츠 창작자 및 플랫폼 스타트업에 대한 맞춤형 창업지원 및 디지털 장비·인력 활용 지원

2. 「콘텐츠산업 진흥법」 제17조의2에 따른 통합기반시설 구축 지원

3. 지역 대학·기업 연계를 통한 창작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지원

4. 해외 진출 연계 글로벌 로컬 K-컬처 클러스터 조성 지원

③ 그 밖에 K-컬처거점지구의 지정 절차 및 방법,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